

9-12.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

- 조정교부금이란 시·도가 관할 시·군·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·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.
우리 군위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.

▶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

- 교부주체와 객체 : 특별·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
- 배분기준 :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액와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(재정 부족액)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분배
⇒ 재정수요액이 클수록, 재정수입액이 작을수록(재정부족액이 클수록) 조정교부금 교부 규모가 커짐

▶ 시·군 일반조정교부금

- 교부주체와 객체 : 광역시·도가 관할 시·군에 교부하는 재원
- 배분기준 : 재원의 50%는 인구수, 30%는 시·도세 징수실적, 20%는 재정력 역지수에 따라 분배
⇒ 인구수가 많을수록, 징수실적이 많을수록,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

▶ 특별조정교부금

- 재해, 공공시설의 신설·복구·보수 등 특정한 재정수요가 있어 충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

※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·군 조정교부금 모두 일반조정교부금(90%) 및 특별조정교부금(10%) 으로 구성됩니다.

▶ 별도 재정보전금

- 화력발전·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%를 소재 시·군에 배분
-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20%를 소재 시·군·구에 배분